서울특별시마포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 및 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07. 5. 22
행정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7년 5월 11일 마포구청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7년 5월 14일

다. 상정일자 : 제128회 임시회 제1차위원회 (2007. 5. 22)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감사담당관 이 관 재

가. 제안이유

「공직자윤리법」의 개정에 따라 우리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에 관한 사항을 법령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조례의 일부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

나. 주요 개정 골자

○ 마포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권 변경 (안 제3조제2항)

-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을 종전의 구소속 공무원, 구의회 의원 및 구의회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에서, 구소속 5급이하 공무원,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·직원, 구의회 소속 5급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함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(전문위원 박 관 수)

○ 동 개정조례안은 2006년 12월 28일 개정되고 2007년 6월 29일부터 시행되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마포구

시설관리공단 이사장및 상임이사와 감사, 세무1·2, 보건위생, 건축, 주택, 녹지환경, 토목, 치수방재분야 5급이하 7급이상의 구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재산등록 사항은 마포구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·결정하고, 구의회의원 및 구소속 4급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재산등록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 공직자윤리위원회로 관할이 변경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안 제3조제2항을 개정하고 2007년 6월 29일부터 시행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회의록 참조

5. 토론요지 : 없 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8. 기타사항 : 없 음

서울특별시마포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

제출년월일 : 2007. 5. .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개정이유

「공직자윤리법」의 개정에 따라 우리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에 관한 사항을 법령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조례의 일부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○ **마포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권 변경 (안 제3조제2항)**

-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을 종전의 구소속 공무원, 구의회 의원 및 구의회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에서, 구소속 5급이하 공무원,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·직원, 구의회 소속 5급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함

3. 개정근거

○ **「공직자윤리법」 제9조**

4. 조례안 : 따로붙임

5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6. 기타사항

가. 입법예고(2007. 3. 29 ~ 2007. 4. 18)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나. 서울특별시 마포구조례·규칙심의회 심의·의결(2007. 4. 26)

다.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. 끝.

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마포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마포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"서울특별시마포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"를 "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"로 한다.

제1조중 "공직자윤리법"을 "「공직자윤리법」"으로 하고 "서울특별시마포구공직자윤리위원회"를 "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직자윤리위원회"로 한다.

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, 동조제2항제1호 및 동조동항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.

②위원회의 관할은 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,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·직원, 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.

제10조중 "공직자윤리법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시행규칙"을 "「공직자윤리법 시행령」 및 「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」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07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명: 서울특별시마포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	제명: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(이하 법 이라 한다) 제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공직자윤리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공직자윤리법」(이하 법 이라 한다) 제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직자윤리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3조(기능) ① (생 략) ②위원회의 관할은 다음 각호와 같다.	제3조(기능) ① (현행과 같음) ②위원회의 관할은 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,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·직원, 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.
1. 구소속공무원 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	<삭제>
2. 구의회 의원 및 구의회 소속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	<삭제>
제10조(준용)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.	제10조(준용)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「공직자윤리법 시행령」 및 「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」의 규정을 준용한다.